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56 호

2005년 10월 7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46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72호(2005정기분재산세공시송달공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73호(인천광역시남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및운영규칙(안)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75호(항촌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채입안을위한공람공고)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76호(공사입찰공고(긴급)(간석4동청사증축공사))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77호(공사입찰공고(긴급)(운연동연락경로당신축공사)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78호((소액수의)공사입찰공고(아주아파트일원도로재포장공사) ..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83호(방치차량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 3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85호(공유재산매각채입찰공고)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86호(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을위한공고·열람) 4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87호(2005-6회차압류차량공매공고) 4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689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46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5-44호(지적측량기준점성고고시) 5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64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1]의 “보조금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관련)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구 분		지 원 금 액 (원)
담장철거	직 각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200,000원까지 지원
	평 행 주 차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1,800,000원까지 지원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2,300,000원까지 지원
이웃간경계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 최고 3,200,000원까지 지원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2대이상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및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지원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분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무개방기간
일반건축물 (교회,사무실 등)	- 주차노면표시 정비(구획선,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200만원 까지	1년
	- 방범시설추가지원(CCTV 및 출입구 차단시설) - 기타 방범 시설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400만원 까지	2년
학 교 (초·중·고·대학교 포함한 모든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1,000만원까지	2년
기본방침	- 자기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방하려는 자로서 모든 개인, 단체, 기관 등 - 지원대상조건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제외)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9일**자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 관련 [별표1]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규정

- 일반건축물(교회, 사무실 등) : 총 95%, 최고 600만원까지
⇒ 1년 의무개방(단, 방법시설추가지원받은 경우 2년 의무개방)
- 학교 (모든 학교) : 총 95%, 최고 1천만원까지, 2년의무개방
- 기본방침 : 인근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방하려는 개인, 단체, 기관 등으로, 일반건축물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 672 호

2005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성 명	강성민 외 1,755명(명단별첨)
주소 또는 거소	인천 남구 관교동 13-10 삼환(아)201-208
서 류 의 명 칭	200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위의 서류를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전출·국외이주·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지방세법 제 51조의 2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를 2005년 10월 2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5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5-6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2. 제정취지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원인규명 및 피해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 본문 ”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453-3986~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목적 취지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예방 및 복구에 노력하고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원인규명 및 피해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내지 제5조)
- 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운영 등(안 제6조 내지 제7조)
-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자연재난에 의한인명피해관리지침(2004. 7. 26)
-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표준(안)-강원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남동구 관할구역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 나.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상
3.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본인의 귀책사유” 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 또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 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다. 강우·강설·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라.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안전사고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
-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조정
- 3. 복구계획 수립시 자문
-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자연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직원, 재난방재 관련 전문가, 의사, 또는 민간단체 임원중에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2. 기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중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의 원인이 되는 자연현상 종료후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

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소관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의결사항 등을 기록·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 675 호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재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2002-57호 ‘02.11.23)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안)을 재입안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년 10 월 5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지구의 명칭 :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 면적 : 207,115㎡(62,652.29평)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07년 12월 30일

다.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전면개량지역 : 대한주택공사장
- 현지개량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단, 주택개량은 주민)

2.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의 내용

가. 주택개량방식 (변경없음)

- 혼합형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 + 현지개량방식)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총계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			
		공동주택 용 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현지개발 용 지	학교 용지	동사무소 용 지	파출소 용 지	소방파출 소	도로 용지	어린이 공원	주차장	종교 용지	유치원 용 지	사회복지 시설
기정	207,115	128,352	5,877	3,808	49,516	998	398	-	14,752	2,014	(2,014)	1,400	-	-
	100.0%	61.97	2.84	1.84	23.91	0.48	0.19	-	7.12	0.97	(0.97)	0.68	-	-
변경	207,115	152,462	5,864	4,092	22,000	1,095	452	1,500	15,467	1,425	-	1,622	586	550
	100.0%	73.6	2.8	2.0	10.6	0.5	0.2	0.7	7.5	0.7	-	0.8	0.3	0.3
변경후	207,115	174,692	5,864	4,092	-	1,095	452	-	15,237	1,425	1,216	1,906	586	550
	100.0%	84.3	2.8	2.0	-	0.5	0.2	-	7.4	0.7	0.6	0.9	0.3	0.3

※ 기정주차장은 어린이공원부지 지하부의 주차장임

다. 공동주택건립계획(변경)

1) 건축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 수	비 고
기 정	128,352	21.37	223.23	1~25	
변 경	152,462	18.66	218.94	1~25	

주)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조건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은 공동주택건립계획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봄

2) 주택공급건립계획

구 분	공급별	총계	114㎡	108㎡	84㎡	75㎡	59㎡	46㎡	비고
기 정	소계	2,852	-	258	1,132	330	854	278	100.0%
	임대	651	-	-	-	-	373	278	22.8%
	분양	2,201	-	258	1,132	330	481	-	77.2%
변 경	소계	3,314	258	-	1,387	367	921	381	100.0%
	임대	731	-	-	-	-	350	381	22.1%
	분양	2,583	258	-	1,387	367	571	-	77.9%

라. 향촌지구 지구지정 결정

1) 향촌지구 지구지정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향촌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207,115	-	207,115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207,115	-	207,115	

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207,115	-	207,115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447	증) 206	54,653	26.4	변 경
			감) 22,024	32,423	15.7	변경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2,668	감) 206	152,462	73.6	변 경
			증) 22,024	174,692	84.3	변경후

2)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54,447	감) 22,024	32,423	200% 이하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일부변경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152,668	증) 22,024	174,692	250% 이하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일부변경

3)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1,939	15,237	1	840	11,685	2	414	412	6	685	3,140
중로	2	936	12,866	1	840	11,685	-	-	-	1	96	1,181
소로	7	1,003	2,371	-	-	-	2	414	412	5	589	1,959

※ 도로면적은 구역 내 도로의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38(60)	중1-62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60(21)	중1-62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60(60)	소3-16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443(203)	소3-14	중1-180	일반 도로		'01.10.8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84(95)	소3-14	중3-1	일반 도로			구간 축소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7(47)	소3-16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72(44)	중1-180	소2-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342(2)	만수동90-2	향촌지구계 (만수동10-1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80	20~25	질산 도로	840(469)	대1-14	중1-62	일반 도로		'01.10.29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6(96)	향촌지구계 (만수동74-25)	중1-180	일반 도로			노선 신설

※ ()는 구역 내 도로의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만수동80-76번지 일원 (구역내)	2,014	-	-	'01.10.8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변경	⑥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만수동80-76번지 일원 (구역내)	2,014	감)2,014	-		지하주차장 폐지
변경후	⑧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만수동80-105번지 일원 (구역내)	-	증)1,216	1,216		주차장 신설

※ 기정주차장은 어린이공원부지 지하부의 주차장임

2)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⑥	주차장	· 지하 주차장 폐지 · 면적변경:2,014㎡ → 0㎡	· 당초 공원(지상), 주차장(지하)으로 중복 결정된 주차장시설을 폐지
⑧	주차장	· 지하 주차장폐지에 따라 대체 부지 확보(A=1,216㎡)	· 어린이 공원과 중복결정된 지하주차장 폐 지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⑥	공 원 (주차장)	어린이 공 원 (노외 주차장)	만수동80-76번지 일원 (구역내)	2,014	-	-	'01.10.8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변경	⑦	공 원	어린이 공 원	만수동80-76번지 일원 (구역내)	2,014	감) 589	1,425		주차장 폐지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⑦	공 원	· 지하부 주차장 폐지 · 면적변경 : 2,014㎡ → 1,425㎡	·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한 부지의 부정 형 및 지형의 불규칙으로 충분한 주차면 수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중복결정 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하부의 주차장을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학교	중학교	만수동109-27번지 일원 (구역내)	12,468	감) 12,468	0	'01.10.8	
폐지	-	학교	초등학교	만수동71-108번지 일원 (구역내)	11,848	감) 11,848	0	'01.10.8	
기정	2-3	학교	중학교	만수동81-99번지 일원 (구역내)	11,437	-	-	'01.10.8	
변경	2-2	학교	고등학교	만수동81-99번지 일원 (구역내)	11,437	감) 437	11,000	-	위치 변경
변경후	-	학교	고등학교	만수동79-19번지 일원 (구역내)	11,437	감)11,437	0	-	폐지
기정	2-4	학교	고등학교	만수동79-19번지 일원 (구역내)	13,763	-	-	'01.10.8	
변경	2-1	학교	초등학교	만수동79-19번지 일원 (구역내)	13,763	감) 2,763	11,000	-	위치 변경
변경후	-	학교	초등학교	만수동71-108번지 일원 (구역내)	13,763	감) 13,763	0	-	폐지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교	· 폐지	· 주변지역의 학교수요 충족으로 인하여 학교부지가 불필요 ·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관계 기관(교육청) 협의에 의한 학 교용지(초1, 고1) 추가 폐지
-	학교	· 폐지	
2-2	학교	· 폐지	
2-1	학교	· 폐지	

나)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1	공공청사	동사무소	만수동 80-282번지 일원	998	증) 97	1,095	
변경	3-2	공공청사	파출소	만수동 80-701번지 일원	389	증) 63	452	
폐지	3-3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만수동 80-516번지 일원	-	증)1,500	-	

2)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3-1	공공청사	· 면적변경 : 998㎡ → 1,095㎡	·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밀도 및 거주민의 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파출소의 면적증가 및 관련기관(소방서)협의를 의한 소방파출소 폐지
3-2	공공청사	· 면적변경 : 389㎡ → 452㎡	
3-3	공공청사	· 소방파출소의 폐지 · 만수동 80-516번지 일원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

가) 계획방향

■ 가구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적정 가구규모의 확보 및 인접 가구규모와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적정 가구규모 설정

■ 획지계획

- 개발용도, 필지형태, 토지소유자, 소규모 필지 등 현황파악을 토대로 획지계획 수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①	174,692	1	152,590	공동주택용지
			2	22,102	
-	②	1,547	1	1,095	동사무소
			2	452	파출소
-	③	1,906	1	1,400	종교용지
			2	506	
-	④	5,864	1	510	근린생활시설용지
			2	1,274	
			3	1,323	
			4	1,247	
			5	145	
			6	700	
			7	665	
-	⑤	586	-	586	유치원용지(영.유아보육시설포함)
-	⑥	550	-	550	사회복지시설용지
-	⑦	1,425	-	1,425	공 원(지하추자장 폐지)
-	⑧	1,216	-	1,216	주 차 장(신설)
-	⑨	4,092	1	1,286	현지개량지역
			2	994	
			3	556	
			4	790	
			5	394	
			6	43	매각예정용지
			7	29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① (1-1)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대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종로 1-180호선변 : 2m

2) 공동주택용지(2)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① (1-2)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공동주택 부대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종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2-312호선변 : 2m

3)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②	용 도	· 지정용도 : 동사무소(2-1), 파출소(2-2)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종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4) 종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③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선교유치원 허용)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종로 1-180호선변 : 2m · 종로 3-1호선변 : 1m

5)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④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종로 1-180호선변 : 2m · 종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6) 유치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⑤	용 도	· 지정용도 :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포함)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종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4호선변 : 1m

7)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⑥	용 도	· 지정용도 : 사회복지시설 (1개층에 한하여 종교집회장 허용)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5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7호선변 : 1m

8) 현지개발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⑨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권장용도 :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아파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보건법에 정하는 절대정화구역안에 금지하는 업종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8조에 의한 건폐율 적용 단, 건축선(1m)에 접한 필지는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최대 10%이하)
		용적률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0조에 의한 용적률 적용
		높 이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1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4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공동주택용지	· 판상형 건축물은 22층 이하, 타워형 건축물은 25층 이하로 층수를 규제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유도 · 비휴먼스케일의 건축물군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형성 유도	· 고층화 / 초고층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중로 1-180호선변 획지	·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가로변의 미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 · 보행기능의 강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배후 주거지의 서비스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상업가로의 조성	· 중층화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공동주택 획지 내 보행 및 차량동선	· 최소폭원 3m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 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 공동주택용지의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중로 1-180호선 도로변 ·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 획지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단) 도로의 교차로,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중로 1-180호선변, 소로 2-312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 1-180호선변 및 소로 2-312호선변 부족한 보도 확보	· 중로 1-180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 2-312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3-1호선변,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전면공지 (차도부속형) : 이면도로의 차량서비스 공간 확보	· 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별표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어구역
주동배치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을 부여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적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배치	• 공동주택용지
	• 부지의 효율성및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하게 배치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건축한계선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및 보도확폭	• 중로 1-180호선변 : 폭 2m - 소로 2-312호선변 : 폭 1m
	• 이면도로의 차량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한 차도 확폭	• 중로 3-1호선변,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폭 1m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어구역
외 장	• 색채 - 건축물 외벽색채의 기초는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색조로 유도함 • 형태 / 재료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질이 높은 것으로 함	• 구역전체
건축물 형태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조 명	• 기존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건축계획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명설치 유도 •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등 설치권장	• 가로변 및 보행통로 주변
건축설비	•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건축물 안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변 경관에 배려하도록 함 • 가로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설비시설은 조경 등으로 차폐하여 시각적 위압감 완화	• 구역전체
캐노피 / 차양막	• 보도 및 보행가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 권장 • 최저높이 3.5m 이상, 최고 돌출길이 3m 이하	• 중1-180호선변
경사지붕	•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성 권장 • 간선가로변 건축물은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해 평지붕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 등을 권장	• 공동주택
벽면처리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중1-180호선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처리	• 폭 20m 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지 않음	• 중1-180호선변
간판 및 광고물	• 건축물에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는 가능한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 • 경사지붕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구역전체
1층부 형태	• 쇼윈도 - 상업가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쇼윈도 등의 설치 • 투시형 셔터 / 투시벽 - 1층 전면용도와 가로활동과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그래픽 셔터 등을 사용	• 중1-180호선변

Ⅱ.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Ⅲ.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지구의 토지조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Ⅳ.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7일간

Ⅴ. 공람장소 :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032-453-2682)

만수2동 사무소 (☎ 032-453-3800)

만수3동 사무소 (☎ 032-453-382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76 호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1. 공 사 명 : 간석4동 청사 증축공사
- 1.2. 공사현장 : 남동구 간석동 575-1번지
- 1.3. 공사내용 : 건축공사
 - 대지면적(679.4m²), 연면적(999.94m²), 규모(지하1층, 지상3층)
 - 증축면적 : 3층 178.42m²
-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1.5. 공사예정금액 : ₩126,934,000원(추정가격 ₩115,394,550원, 부가가치세 ₩11,539,450원)
- 1.6. 기초금액 : ₩126,934,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2005. 2. 3),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1호 2005. 2. 3)이 적용됩니다.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이어야 합니다.
- 3.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3.4.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3.5.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6.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와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5.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2.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전자12140-4, 2002.9.12)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제출기간 : 2005. 10. 05.(수) 09:00 ~ 2005. 10. 11(화) 14: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10. 11(화) 15:00

7.2.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PC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7.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26,934,000원)의 -3%~+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5.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3.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8.4.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G2B)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8.5.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2),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032-453-2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77 호

공사입찰공고(긴급)**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1. 공 사 명 : 운연동 연락경로당 신축공사
- 1.2. 공사현장 : 남동구 운연동 7-1번지
- 1.3. 공사내용 : 건축공사
 - 대지면적(200㎡), 연면적(107.51㎡), 규모(지상1층)
 - 건축공사(설비, 소방, 토목 포함)
-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 1.5. 공사예정금액 : ₩134,950,000원(추정가격 ₩99,382,730원, 부가가치세 ₩9,938,270원, 관급액 ₩25,629,000원)
- 1.6. 기초금액 : ₩109,321,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60호 2005. 2. 3),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1호 2005. 2. 3)이 적용됩니다.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이어야 합니다.
- 3.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3.4.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3.5.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6.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와 장소 : 생략

5. 입찰보증금

5.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2.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전자12140-4,2002.9.12)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제출기간 : 2005. 10. 05.(수) 09:00 ~ 2005. 10. 11(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10. 11(화) 11:00

7.2.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PC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7.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09,321,000원)의 -3%~+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5.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 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8.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3.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8.4. 공고안및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8.5.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2),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032-453-2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5 - 678 호

(소액수의)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주아파트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나.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동 5-321번지 부근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개요

- 아스팔트포장 ----- A = 44.6a
- 노면파쇄 ----- V=215.9m³
- 흙관부설 ----- L=90m
- 집수받이 설치 ----- N=12개소

마. 설계금액 : ₩38,819,000원 (추정가격35,290,000원, 부가세3,529,000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

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5. 10. 05(수) 09:00~2005. 10. 12(수) 13: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5. 10. 05(수) ~2005. 10. 12(수) [건설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5. 10. 12(수) 14: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38,819,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

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032-453-221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0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83 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이 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5. 10. 5.~2005. 10. 24.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5. 10. 24.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인천35거4861 외 19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750~4)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모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302	인천35가4861	세피아	간석4동579번지 동아골프연습장 옆	뉴크리아텔레콤	인천 서구 석남동570-15호	기전매차영입소
305	인천31라4142	포티샤	구월1동 남부소방서 뒤	㈜백두중합개발	인천 남동구 민수동1077-5호 호성빌딩3층	기전매차영입소
309	인천34나1831	세피아	간석1동439번지 이화공원 옆	원터울	인천 계양구 계산동906-8호 장하주택1/301호	기전매차영입소
310	인천2고6789	엑셀	남동공단산업용풍상기D동 옥상주차장 내	㈜삼물엔지니아링	인천 부평구 십정573-31호	기전매차영입소
311	인천1모3303	에스페로	남동공단산업용풍상기D동 옥상주차장 내	문광원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0번지 대림3차@303/102호	기전매차영입소
321	경북41라5292	누리스	구월3동1382번지 배수필공장 옆	김성완	인천 남동구 구월동1357-7호	서울매차영입소
323	인천76가2302	콜비	구월1동1193-4호 앞	권숙녀	인천 서구 석남동450-12호	서울매차영입소
324	인천80라6568	와이드볼고	장수동785-9호 LG주유소 옆	오계문	서울 구로구 개봉동357-27호	서울매차영입소
325	인천35마4267	누리스	민수5동921-3호 금원@가동 옆	임경철	인천 남구 주안동32-2호 금강언덕 가/301호	서울매차영입소
326	인천32마4411	소나타2	민수1동1071-6호 동일빌라	강성주	인천 남동구 민수동988-3호 8/4반 501호	서울매차영입소
327	인천32나5925	마티즈	민수1동958번지 성당후문 앞	㈜씨씨앤씨	인천 동구 송림동 294번지 산업유통센터10-216호	서울매차영입소
328	인천32가8654	프라이트베타	장수동 육교역 치강진주어탕안 공용주차장 내	임동철	인천 남동구 간석동224-745호 뉴파크빌리지6/B01호	서울매차영입소
329	인천35마2215	소나타2	간석1동342-3호 금호@위 이면도로	전재환	인천 서구 가좌동329-5호 대영언덕7/102호	서울매차영입소
330	인천31마9400	엘란트라	간석3동52번지 앞	임재형	인천 남동구 간석동35-1호 두원파크빌103/301호	서울매차영입소
334	경기83다2753	그레이트스	간석3동1-187호 앞	최종덕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323-4호 양지마을B/301호	서울매차영입소
338	인천80마6658	포티	간석4동243-2호 해룡빌라 앞	장동희	인천 중구 연북동94-7호	인천매차영입소
340	인천34마2399	그랜저	간석3동169-13호 골목	이홍구	인천 연수구 옥련동405-65호 송도아파트세대 가/B01호	인천매차영입소
342	인천7가6252	포티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장 옆	이정환	인천 남동구 구월동1391-2호 B02호	인천매차영입소
349	인천7나1236	포티	민수2동 유신주공11단지 상가뒤	봉명진	인천 남구 도화동51-15호	인천매차영입소
350	인천72다1347	레조	간석2동159-14호 석우빌라 앞	최진규	인천 서구 석남동554-30호 엑스포빌리지 10/B03 호	인천매차영입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685 호

공유재산 매각 재입찰 공고

공유재산(舊 만수3동청사)매각계획에 의거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2005. 10. 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공유재산(舊만수3동 청사) 매각
나. 입찰내용

재산명칭	위 치	토지현황		건물면적 (㎡)	예정가격 (원)
		지목	면적(㎡)		
舊만수3동 청 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0-2	대지	387.40	613.91 (지하1층/지상3층)	779,856,970

2. 입찰방법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2005. 10. 07(금) 10:00~2005. 10. 17(월) 16:00까지 온비드에 제출

4.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2005. 10. 18(화)10:00 인천광역시남동구청경영재정과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후 온비드의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찰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찰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외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로는 “외환위탁”입니다.

9.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 가.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번호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10. 낙찰자 결정

- 가.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입찰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합니다.
- 나.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수표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보며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다.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매각대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 규정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됨

15. 입찰유의사항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나.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다. 매각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위 제반 사항을 열람,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032-453-2237~9)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02-3420-5015)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5 - 686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	6	국 지 도 로	143.8	논현동 543-6 (소3-5호선)	도림동 434-18	일 반 도 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5 - 687 호

2005-6회차 압류 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 다 음 -----

가. 공매대상재산(차량)의 표시

연번	공매 차수	채 납 자		채 납 금 액	공 매 물 건	매 각 예정가격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5차	김 명 섭	650315-1042325	3,861,700	인천31러3250	450,000	등록원부 참조
2	5차	김 경 만	690610-1836029	669,170	인천31로9907	630,000	등록원부 참조
3	3차	이 창 우	630228-1000526	2,263,690	인천3녀8059	270,000	등록원부 참조
4	2차	홍 연 표	731207-2224119	406,610	인천32나3747	1,350,000	등록원부 참조
5	1차	장 재 일	600115-1018931	2,147,860	인천30러9863	2,000,000	등록원부 참조
6	1차	이 철 주	541004-1041319	1,224,700	인천31로7508	1,500,000	등록원부 참조
7	1차	맹 홍 재	391219-1148913	312,300	인천32라4790	300,000	등록원부 참조
8	1차	이 길 선	660301-1148836	1,704,500	인천31고9611	200,000	등록원부 참조
9	1차	김 민 수	820421-1156421	91,150	인천80더7569	1,000,000	등록원부 참조
10	1차	김 영 호	620421-1321711	633,590	인천30누7445	1,000,000	등록원부 참조
11	1차	이 석 규	440328-1150317	136,880	인천80더8931	4,000,000	등록원부 참조
12	1차	박 귀 심	630117-2648826	2,019,090	인천31무8788	6,000,000	등록원부 참조
13	1차	석 윤 기	381101-1057115	7,043,300	인천33나4914	500,000	등록원부 참조

나. 입찰신청 및 보증금 입금마감기간 : 2005. 10. 5. ~ 2005. 10. 17 . 24:00 (13일간)

※ 유의사항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유찰시 2회차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공고(다음 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다. 입찰 참여마감일시 : 2005년 10월 17일 (화) 24시

라.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05년 10월 18일 (수) 14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 발표

※ 입찰참여 마감후 입찰보증금 입금여부 확인

마.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하며,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기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단독입찰 가능 단, 국세징수법 제66조 해당자 입찰 제한)

바.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1.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http://automart.co.kr>) 입찰등록시 개인정보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다음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입찰보증금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입금계좌번호 : 한미은행 465-00095-258, 남동구청(본인명의로만 입금)

※ 주의 : 입찰신청후 약 15분정도 지난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신청후 [입찰참여] 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사.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아.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처저가격임

자. 기타사항

- ※ 공매물건의 하자 및 표시착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본인 책임하에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7,500원이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징수관리팀 차량공매담당 ☎032-453-2294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0. 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 - 689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0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취지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임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제2항**

⇒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 규정 신설

· **안 제5조 제2항 제3호**

⇒ 통장 연임 횟수(3회) 제한 규정 삭제

· **안 제5조 제3항의 해촉기준 개정 및 신설**

⇒ 5.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6. 각종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53-218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 계획 : 없 음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임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제2항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통·반장의 재위촉 제한 규정 신설
- 안 제5조 제2항 제3호
통장 연임 횟수(3회) 제한 규정 삭제
- 안 제5조 제3항의 해촉기준 제5호 내지 제8호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 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5.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 6. 각종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본문 : 별지 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지 참조

☐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5조(통·반의 위·해촉) 제2항 후단에

“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중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중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중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 “3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를 “동장이 소

집하는 통·반장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

7.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8. 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u>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생략”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2.“생략” 3.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단,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 명칭변경 및 동의 통·반 조종시 동일인이 통장 재위촉의 경우에는 연임으로 본다. ③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4.“생략” <u>5.3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u> <u>6.“신설”</u> <u>7.“신설”</u> <u>8.“신설”</u> 9.“현행 6호”	<u>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u>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 -----, 단, <u>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선거활동을 위해 사퇴한 경우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u> 1~2.“현행과 같음” 3.----- ----- (삭제) (삭제) ----- ----- -----. ③----- ----- ----- 다만, <u>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고 3회에 해촉할 수 있다.</u> 1~4.“현행과 같음” <u>5.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경우</u> <u>6.각종 시책 추진에 역행하는 경우</u> <u>7.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u> <u>8.민·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u> 9.“현행 6호와 같음”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5-44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가리원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측 량 연 월 일	별 첨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기타)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	지적삼각보조점	보18	438207.58	177569.23	2180.91	-10620.25	2005.9.2	표석	장수동 560번지일원	설치
2	지적삼각보조점	보19	438254.23	178091	2,028.33	-10098.27	2005.9.2	표석	장수동 560번지일원	설치
3	도근점	3372	439645.91	173925.99	3413.75	-14265.37	2005.9.30	철재	간석동 938-1일원	재설치
4	도근점	3374	439737.34	173879.4	3505.1	-14312.08	2005.9.30	철재	간석동 938-1일원	재설치
5	도근점	3375	439832.41	173874.6	3500.17	-14317.01	2005.9.30	철재	간석동 938-1일원	재설치
6	도근점	3376	439838.31	173966.4	3606.2	-14225.22	2005.9.30	철재	간석동 938-1일원	재설치
7	도근점	3379	439591.63	174135.54	3359.76	-14055.73	2005.9.30	철재	간석동 938-1일원	재설치
8	도근점	3380	439764.38	174126.11	3532.49	-14065.4	2005.9.30	철재	간석동 938-1일원	재설치
9	도근점	3485	438511.94	177549.95	2285.24	-10639.6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0	도근점	3486	438603.93	177494.77	2377.15	-1069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1	도근점	3487	438776.65	177562.67	2549.97	-10827.3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2	도근점	3488	439032.28	177729.25	2805.84	-10461.1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3	도근점	3489	439078.77	177756.97	2852.37	-10433.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4	도근점	3490	439024.27	177778.39	2797.9	-1041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5	도근점	3491	438861.52	177782.47	2635.17	-10407.6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6	도근점	3492	438865.47	177835.29	2639.19	-10354.8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7	도근점	3493	438855.65	177899.11	2629.47	-10291.0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8	도근점	3494	438935.24	177905.39	2709.06	-10284.8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9	도근점	3495	438928.23	177936.92	2702.1	-10253.3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0	도근점	3496	438934.13	177981.14	2708.06	-10209.1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1	도근점	3497	438861.42	177977.79	2635.35	-10212.3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2	도근점	3498	438855.72	178047.43	2629.75	-10142.7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환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환선수치(기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23	도근점	3499	438865.6	178079.06	2639.68	-10111.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4	도근점	3500	438901.35	178047.33	2675.37	-10142.8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5	도근점	3501	438908.51	178115.51	2682.64	-10074.7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6	도근점	3502	438908.53	178151.72	2682.72	-10038.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7	도근점	3503	438861	178176.63	2635.22	-10013.5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8	도근점	3504	438878.78	178221.16	2653.07	-9969.0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29	도근점	3505	438909.83	178259.07	2684.17	-9931.1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0	도근점	3506	438866.46	178288.35	2640.85	-9901.8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1	도근점	3507	438841.52	178237.55	2615.84	-9952.5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2	도근점	3508	438803.04	178230.9	2577.35	-9959.1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3	도근점	3509	438765.43	178234.55	2539.74	-9955.4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4	도근점	3510	438762.73	178261.14	2537.08	-9928.8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5	도근점	3511	438763.03	178295.3	2537.43	-9894.7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6	도근점	3512	438766.45	178339.36	2540.91	-9850.6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7	도근점	3513	438708.39	178342.89	2482.86	-9847.0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8	도근점	3514	438668.4	178344.63	2442.87	-9845.2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39	도근점	3515	438631.04	178329.66	2405.49	-9860.1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0	도근점	3516	438565.89	178276.7	2340.27	-9913.0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1	도근점	3517	438519.9	178183.9	2294.14	-10005.7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2	도근점	3518	438437.62	178354.15	2212.11	-9835.3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3	도근점	3519	438344.21	178420.36	2118.79	-9769.0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4	도근점	3520	438216.07	178473.88	1990.73	-9715.3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5	도근점	3521	438318.8	178181.37	2093.02	-10007.9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6	도근점	3522	438340.58	178058.38	2114.63	-1013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환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환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47	도근점	3523	438352.92	177957.07	2126.82	-10232.3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8	도근점	3524	438367.38	177841.21	2141.12	-10348.2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49	도근점	3525	438390.72	177651.97	2164.17	-10537.4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0	도근점	3526	438503.84	177701.81	2277.37	-10487.8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1	도근점	3527	438573.12	177778.66	2346.77	-10411.0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2	도근점	3528	438628.81	177780.43	2402.45	-10409.3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3	도근점	3529	438675.1	177827.96	2448.82	-10361.9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4	도근점	3530	438632.83	177848.91	2406.57	-10340.9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5	도근점	3531	438662.1	177920.62	2435.95	-10269.2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6	도근점	3532	438701.45	178017.55	2475.44	-10172.3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7	도근점	3533	438711.02	178073.68	2485.09	-10116.2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8	도근점	3534	438729.97	178076.75	2504.05	-10113.2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59	도근점	3535	438769.14	178077.32	2543.22	-10112.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0	도근점	3536	438760.96	178174.06	2535.18	-10015.9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1	도근점	3537	438810.37	178180.54	2584.6	-10009.5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2	도근점	3538	438807.29	178080.19	2581.37	-10109.8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3	도근점	3539	438816.36	177977.71	2590.29	-10212.3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4	도근점	3540	438760.73	177980.45	2534.67	-10209.5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5	도근점	3541	438743.59	177936.75	2517.46	-10253.2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6	도근점	3542	438719.39	177898.17	2493.21	-10291.7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7	도근점	3543	438719.05	177835.33	2492.78	-10354.6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8	도근점	3544	438580.09	177754.27	2353.7	-10435.4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69	도근점	3545	439132.39	177815.64	2906.08	-10374.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0	도근점	3546	439188.67	177866.8	2962.43	-10323.8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환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환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71	도근점	3547	439106.43	177872.06	2880.2	-10318.4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2	도근점	3548	438964.85	177840.9	2738.58	-10349.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3	도근점	3549	438925.02	177875.05	2698.81	-10315.1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4	도근점	3550	438952.95	177905.29	2726.78	-10285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5	도근점	3551	438991.32	177935.68	2765.19	-10254.6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6	도근점	3552	438983.53	177990.74	2757.47	-10199.58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7	도근점	3553	438967.89	178125.71	2742.03	-10064.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8	도근점	3554	439013.58	178131.66	2787.73	-10058.7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79	도근점	3555	439049.9	178172.13	2824.11	-10018.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0	도근점	3556	439027.53	178217.7	2801.81	-9972.6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1	도근점	3557	438988.18	178201.08	2762.44	-9989.2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2	도근점	3558	438949.79	178182.03	2724.02	-10008.2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3	도근점	3559	438926.83	178295.62	2701.22	-9894.6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4	도근점	3560	438863.25	178331.57	2637.7	-9858.5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5	도근점	3561	438711.46	178303.94	2485.87	-988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6	도근점	3562	438682.9	178310.08	2457.32	-9879.8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7	도근점	3563	438658.97	178301.23	2433.38	-9888.6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8	도근점	3564	438649.55	178237.86	2423.86	-9951.9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89	도근점	3565	438681.85	178230.88	2456.15	-9959.01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0	도근점	3566	438709.94	178234.9	2484.25	-9955.0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1	도근점	3567	438585.24	178261.38	2359.6	-9928.3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2	도근점	3568	438617.58	178219.5	2391.87	-9970.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3	도근점	3569	438656.56	178212	2430.84	-9977.86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4	도근점	3570	438654.74	178158.51	2428.93	-10031.3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중환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환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95	도근점	3571	438713.57	178156.15	2487.76	-10033.7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6	도근점	3572	438727.09	178008.77	2501.07	-10181.1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7	도근점	3573	438706.33	177945.4	2480.21	-10244.5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8	도근점	3574	438819.89	177932.77	2593.75	-10257.3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99	도근점	3575	438774.57	177916.1	2548.41	-10273.92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00	도근점	3576	438762.58	177832.15	2536.31	-10357.87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01	도근점	3577	438813.91	177832.1	2587.63	-10357.99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02	도근점	3578	438776.99	177786.89	2550.64	-10403.14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
103	도근점	3579	438700.72	177829.78	2474.43	-10360.13	2005.9.2	철재	장수동 560번지일원	신설